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015. 3. 27.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관련 규정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현재 공포된 원안대로 **2016. 9. 28. 시행 예정**이고, 위 법률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의 뇌물죄 등에 비하여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종래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관행이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한 법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신&유법률사무소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신&유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종식

T. 02.6323.6221
E. jskim@shinyoo.co.kr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 제1호, 제2호). 단, 일반 국민 모두는 위 사람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 공직자등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의 장, 교직원,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2) 공직자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청탁금지법의 금지행위 등

가.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조 제1항).

(1) 부정청탁의 유형(15가지)

- 불법 인허가, 검사, 검정, 시험, 인증 등 처리
- 법령을 위한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 공직자등의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 이상의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관한 공직자의 지위, 권한남용에 개입

(2) 부정청탁의 예외사유(7개)

- 행정절차법 등 법령이나 공공기관 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구제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결과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공직자등의 신고의무(제7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함.

(4) 벌칙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본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인은 처벌 대상은 아님(단, 금품 제공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금품등의 의미(제2조 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금지의 내용(제8조, 제10조)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 요구, 약속 금지
- 직무와 관련된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 수

수, 요구, 약속 금지(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동일함). → 판례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함에 주의. 단, 경조사비 등 예외 있음.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시간당/건당 일정 금액(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세분, 주체에 따라 다름)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령 금지

(3) 금지의 예외(제8조 제3항 각호)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 경조사비(10만원 이내)
- 공직자의 친족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등(제9조)

공직자등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징계함.

(5) 벌칙

-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자 및 공여자 모두)
-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공직자 및 공여자 모두)

다. 양벌규정 및 위반행위의 신고

-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본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 내지 사업주에 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사유 발생 가능
- 누구든지 위반행위 신고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 존재. 위반행위자가 자진신고시 형사처벌 등 감면.

3. 대관(對官)업무 패러다임의 변화

청탁금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각종 인허가, 정부계약 참가 등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 접대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세무상 불이익 위험이 높아졌고, 본법 위반에 관한 고발·신고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개인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역시 양벌규정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래 대관업무의 관행을 재검토하고 민감한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중

업원 등의 내부 준법통제를 위한 Compliance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Shin & Yoo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질의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고객에 필요한 Compliance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Shin & Yoo에서 신속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IN & YOO
Legal Advisory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56길 9, 우리기술빌딩 11층

T. 02.6323.6220
F. 02.6323.6223